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87
------------	------------

제출년월일 : 2008. 4.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목적 구체화 (안 제1조)

- 1)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구체화 함

나. 예우 및 지원대상 규정 (안 제3조)

- 1)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함

다.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규정 (안 제7조)

- 1)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규정 함

라. 보훈단체 지원 규정(안 제8조)

- 1)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당초예산 활용

다. 기타

1) 입법예고((2008. 1. 30~ 2. 1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3.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단체에는 근조기 제작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하여 증정
7.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8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 무료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2條(禮遇의 基本理念) 우리 大韓民國의 오늘은 온 國民의 愛國精神을 바탕으로 戰歿軍警 및 戰傷軍警을 비롯한 國家有功者의 희생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의 榮譽로운 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實質的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6. 3. 3>

第3條(政府의 施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有功者의 愛國精神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第2條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한다. <改正 1995. 12. 29>

第4條(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改正 1988. 12. 31, 1991. 12. 27, 1993. 12. 31, 1994. 12. 31, 1999. 8. 31, 2000. 12. 30, 2002. 1. 26, 2005. 7. 29>

1. 殉國先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

2. 愛國志士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愛國志士

3. 戰歿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轉役(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退職(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戰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5. 殉職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教育訓練 또는 직무수행중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公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教育訓練 또는 職務遂行중 傷痍(公務上の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7. 武功受勳者 : 武功勳章을 받은 者
- 7의2. 保國受勳者 : 保國勳章을 받은 者
8. 6·25參戰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 이라 한다) :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日本國에 居住하던 者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의 사이에 國軍 또는 國際聯合軍에 志願 入隊하여 6·25事變에 參戰하고 除隊된 者(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19革命死亡者 :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死亡한 者
10. 4·19革命負傷者 :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傷痍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 10의2. 4·19革命功勞者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한 자 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建國褒章을 받은 자
11. 殉職公務員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公傷公務員: 「국가공무원법」 第2條 및 「지방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일상적으로 公務에 종사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으로서 公務로 인하여 傷痍(公務上の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

13.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殉職者(이하 “特別功勞殉職者” 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殉職한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14.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傷痍者(이하 “特別功勞傷痍者” 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傷痍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되어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15.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者(이하 “特別功勞者” 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第13號 및 第14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1988. 12. 31, 2002. 1. 26>

1. 제1항제3호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

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削除 <2002. 1. 26>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愛國志士의 禮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新設 1994. 12. 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國家有功者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新設 2002. 1. 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第5條(遺族등의 범위) ①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는 國家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1. 12. 27, 1994. 12. 31, 2000. 12. 30>

1.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다만, 配偶者 및 사실상의 配偶者가 國家有功者와 婚姻 또는 事實婚후 당해 國家有功者外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子女
3. 父母

4.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없는 祖父母

5. 60歲미만의 男子 및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未成年弟妹

6. 削除 <1994. 12. 31>

7. 削除 <2000. 12. 30>

②第1項第2號의 子女의 경우, 養子는 國家有功者가 直系卑屬이 없어 入養한 者 1人에 한하여 子女로 본다. <改正 1991. 12. 27, 1994. 12. 31, 1995. 12. 29>

③削除 <1994. 12. 31>

④第1項第3號의 母의 경우, 國家有功者를 養育하거나 扶養한 사실이 있는 父의 配偶者와 生母가 각각인 때에는 國家有功者를 주로 養育하거나 扶養한 者 1인을 母로 본다. <改正 1991. 12. 27>

⑤第1項第4號의 경우,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人이거나 現役兵(志願에 의하지 아니한 副士官 및 常勤豫備役으로 召集된 者,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公益勤務要員으로 召集된 者, 「병역법」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義務服務期間중에 있는 때에는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1991. 12. 27, 1993. 12. 31, 1994. 12. 31, 2000. 12. 26, 2002. 1. 26>

⑥第1項第5號의 경우, 60歲미만의 男子 또는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있더라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人이거나 現役兵으로서 義務服務期間중에 있는 때에는 60歲미만의 男子 및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1991. 12. 27, 1994. 12. 31>

⑦削除 <1994. 12. 31>

⑧削除 <2000. 12. 30>

第6條(登錄 및 決定) ①國家有功者·그 遺族 또는 家族, 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1997. 1. 13, 2002. 1. 26>

②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國家有功者·그 遺族 또는 家族, 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 決定한다. 이 경우 第4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 第11號 및 第12號의 國家有功者 또는 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되기 위하여 登錄을 申請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 1. 13, 2002. 1. 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國家有功者·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國家有功者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02. 1. 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서 이 法의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新設 1988. 12. 31, 1997. 1. 13, 2006. 3. 3>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第10條(儀典상의 禮遇)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및 各급 學校등은 國慶日·記念日등 중요한 行事를 하는 때에는 殉國先烈에 대한 默念을 國民儀禮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 獨立有功者에 대하여는 상응한 儀典상의 禮遇를 하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第6條(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報償등) ①第4條第7項 및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와 第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중 그 障礙程度가 處長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6條의 4第1項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4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으로,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6號의 규정에 의한 公傷軍警으로 각각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을 행한다.<改正 2000.2.3, 2007. 1. 3>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68조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 3, 2007. 7. 27>